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28 발의연월일: 2021. 2. 26.

발 의 자: 송갑석ㆍ이수진ㆍ인재근

조오섭・이개호・이형석

양향자 · 문진석 · 이용빈

민형배 · 윤영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법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집합금지 등 소상공 인의 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조항이 법률에 규정되어있지 않아 헌법 제23조의 취지에 부합 하지 않고,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다수의 전문가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글로벌 팬데믹 현상은 향후 재발할 것이며,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 주기가 단축될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함.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 확산 시 조치할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에따라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보상 제도를 구축하여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 ①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등을 제한한 경우 제12조의3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② 보상의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 12조의3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3의 심의위 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감액, 지급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⑥ 그 밖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을 제12조의5로 하고,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3(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제12조의2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 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보상의 대상, 기준, 규모,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시한 다.
 -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소상공인의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장에게 과세정보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자료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등 다른 법률에 우선

하여 적용된다.

- 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4(심의위원회 지원 등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 효율적인 손실보상 등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
 - 2.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수집ㆍ처리
 - 3. 손실보상 체계 구축 및 운영
 -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보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
	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 ①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상공인의 영업
	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등을 제
	한한 경우 제12조의3의 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소상
	공인의 손실을 보상하여야한다.
	② 보상의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은 제12조의3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3의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
	소기업 등 소상공인 이외의 자
	에게 보상할 수 있다. ④ 주스베워기어부자과의 제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가
	_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u><신</u> 설>

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는 보상금의 감액, 지급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 호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 당하는 경우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⑥ 그 밖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3(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제12조의2에 따른 보 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 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보상의 대상, 기준, 규모,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제시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소상공인의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과세정보 등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등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신 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심의위원회 지원 등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①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 효율적인 손실보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 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
- 2.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수집 · 처리
- 3. 손실보상 체계 구축 및 운영4.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및 보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사항
- ③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u>제12조의5</u>(현행 제12조의3과 같음)

<u>제12조의3</u> (생 략)